

##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
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』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(1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 여부 공시 대상] : 해당사항 없음

(2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(1개월) 여부 공시 대상]:

보고서코드	회사코드	펀드명1(운용펀드)	펀드명2(투자자펀드)	펀드코드 (운용펀드)	펀드코드 (투자자펀드)	발생일자
GSMA	A01018	신한브릭스증권투자신탁제1호[주식-재간접형](종류)	신한브릭스증권투자신탁제1호[주식-재간접형](종류A1)	KR5210548610	K55210B13369	20240906
GSMA	A01018	신한브릭스증권투자신탁제1호[주식-재간접형](종류)	신한브릭스증권투자신탁제1호[주식-재간접형](종류A-u)	KR5210548610	K55210B13377	20240906

(3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 해소 공시] : 해당사항 없음

(4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 해소 공시(세부)] : 해당사항 없음

\*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(소규모펀드 해소 공시 제외), 기

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신한자산운용